

등록번호 제 33555437706 호

기본직접지불금(농활용직접지불금) 지급대상자 등록증

[기본: 소농직접지불금() · 면적직접지불금(○)] ※() 해당란에 “○”표시

등록 신청인	성명 (법인명)	노춘희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6202042						
	주소	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누리아파트 111동 706호(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70, 111동 706호 (월평동, 누리아파트))	전화번호	/ 01024660832						
입금계좌	은행명	신한은행	계좌번호	110052394004						
농지등소재지		농지등 소유자	기본직접지불금(소농직접지불금·면적직접지불금)							
읍·면	리·동		지번 (임시지번)	합계	농촌진흥 지역 안(m ²) (논+밭)	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(m ²)		농지등이용면적(m ²)		비고
					논	밭	작물재배	휴경		
평촌동	평촌동	0123-0003	노춘희	1,625	0	0	1,625	1,625	0	
평촌동	평촌동	0123-0001	노춘희	245	0	0	245	245	0	
합계				1,870	0	0	1,870	1,870	0	

위등록신청인은「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」제15조제3항,같은법시행규칙제14조(같은법시행령제45조제4항및시행규칙제37조제1항)에따라기본직접지불금[소농직접지불금()·면적직접지불금(○)]지급대상자로등록하였음을증명합니다.

2024년 05월 25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- 개별 등록농지 중 "비고"란에 "농지대장 현행화 필요"로 표시된 경우, 농지대장 보완이 필요하니, 농지대장을 9월 10일 까지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」제16조제1항(같은법시행령제46조)에따라기본직접 지불금의지급 대상농지등의면적등등록사항이변동되면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농림축산식품장관이정하는 날까지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합니다.
- 기본직접지불금의경우에는「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」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, 법 제19조제1항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.
-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